

의안번호	2219886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 계 번호	26D345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상근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9억 9,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2억 4,600만원(연평균 60억 4,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1,014	1,003	1,034	1,065	1,098	5,215	1,043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연장 (안 제7조)	—	6,630	—	12,444	6,069	25,143	5,029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 하향(안 제15조 등)	△26	△26	△27	△28	△29	△136	△27
감사위원회 운영 (안 제15조의3)	4.8	4.8	4.8	4.8	4.8	24	4.8
합 계	993	7,612	1,012	13,486	7,143	30,246	6,049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변경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공고일 10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소청제기기간, 제222조제1항 선거소송제기기간 및 제223조제1항 당선소송제기기간, 「국민투표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기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상근하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15조(사무기구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와 대우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함 ※ 현행법은 사무총장의 보수를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	의무규정
4	안 제15조의2(선거연수원)	-원장의 직급을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현행법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의무규정
5	안 제15조의3(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감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별정려금의 수준을 최저지급 인상률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1항(상임위원)	○	-
2	안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	-
3	안 제15조(사무기구등)	○	(개정안에 따라 사무총장의 보수액이 하향 조정되므로, 개정전·개정후 사무총장 인건비를 추정하여 차감 추계함)
4	안 제15조의2(선거연수원)	○	(개정안에 따라 연수원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므로 개정전·개정후 연수원장 인건비를 추정하여 차감 추계함)
5	안 제15조의3(감사위원회)	○	
6	안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	지급대상, 지급기간 및 지급액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지급 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지급액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상임위원 증원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상임위원 지원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현행법 제12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무위원급으로 규정
 - 상임위원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급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소요액을 추정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2명 증원되는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소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2026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편성¹⁾되어 있고, 상임위원 증원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추가재정소요로 보아 추계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3명의 비서실 인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4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별 3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건비 지출 소요액을 추정함²⁾
 - －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의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각 직급의 보수를 준용하며,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증원 인력에 대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1)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근거

2)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별도 지원 인력은 없음

□ (정당추천위원 상근 기간 연장) 개정안에 따라 현행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는 것으로 전제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추정

구분	현행	개정	변경 내용 상세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 선거·지방 선거 관련	○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개표종료시 까지 상근 가능	○ 선거 전 - 선거기간개시일 100일 전부터 ○ 선거 후 ① 공직선거법 제219조(지방선거 선거소청 관련) : 소청제기기간까지 상근하도록 함 -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제1항), -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제2항) ② 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대선 또는 국선) : 소송제기기간까지 상근하도록 함 -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 소송 제기 가능 ③ 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대선 또는 국선) : 소송제기기간까지 상근하도록 함 -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소송 제기 가능 ※ 위 상근 규정은 의무규정임	○ 선거 전 - 선거기간개시일 100일 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u>100 일 연장</u> ○ 선거 후 - 선거일 다음날 개표 종료 및 당 선인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가정하면, ① 지방선거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상근기간 14일 연장 가능 ② 대선 또는 국선의 경우, 개정 안에 따라 상근기간 30일 연 장 가능
국민투표 관련	○ 국민투표공고일 부터 개표종료시 까지 상근 가능	○ 국민투표공고일 100일 전부터 「국민투표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기기간 이 종료된 때까지 상근하여야 함 ※ 「국민투표법」 상 국민투표일부 터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	○ 국민투표 전 - 투표투표공고일 100일 전부터 투표공고일 전일까지 <u>100일 연장</u> ○ 국민투표 후 - 투표일 다음날 개표가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이 <u>19일 연장되는 효과</u>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법에 따른 상근기간을 최대로 가정할 때,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위원의 상근기간은 선거 전 100일, 선거 후 30일 등 총 130

일 연장가능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상근기간은 선거 전 100일, 선거 후 14일 등 총 114일 연장가능하며, 국민투표 시 상근기간은 투표 전 100일, 투표 후 19일 등 총 119일 연장 가능하므로, 이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추계기간 중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 2030년에는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며, 국민투표 실시 여부 및 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나 추계기간 중 2031년에 1회 실시되는 것으로 전제
 - － 각 선거 및 국민투표는 동시에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현재 25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회별 2명씩, 총 510명의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것으로 전제³⁾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이 특정기간 상근하는 경우 1일 10만원의 출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따른 상근기간 연장 시 1인당 지급하는 지급단가로 보며, 추계기간 중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 하향 관련)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의 직급이 차관급 및 3급으로 하향되므로, 현 보수와 비교하여 보수 감소액을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지출 감소액을 추정함

- 현행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과 동액으로 하고, 선거연수원장의 직급은 2급으로 전제⁴⁾
- 각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차관 및 2급·3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소요액을 추정함

□ (감사위원회 관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

3) 현행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② (생략)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舉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4) 현행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 (생략)

②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 감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5조의3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 증가분을 추가재정소요로 봄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 중 6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⁵⁾
-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으로 증가하며, 별도 규정은 없으나 위원 수 증가만큼 외부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외부 민간위원 수 4명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회의 개최 횟수는 현행과 같이 연 4회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30만원⁶⁾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자산취득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⁷⁾을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산출된 보수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5)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감사위원회회의)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6)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2026.3.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3.0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5,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임위원 증원(안 제6조제1항)

□ (상임위원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 증원되므로, 증원되는 상임위원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함

- 상임위원의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의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 부담금을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고, 증원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상임위원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연봉	155,634
	수당	17,280
	합계	172,914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인원 및 보수 추정(2026년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증원 인원(명)	1인당 보수액(천원)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백만원)
중앙	장관급	2	172,914	34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 외, 상임위원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 소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 직책수행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표 5]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시 직책수행경비 추가재정소요

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증원 인원(명, a)	1인당 지급액 (연간,천원, b)	연간 지급액 (백만원, a×b)
중앙	장관급	2	29,400	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 증가하고 전체 위
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상임 위원 2명이 감소하게 되므로
월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⁸⁾
 -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5,800천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시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
요는 2027년 4억 4,300만원 등 5년간 23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356	367	378	389	401	1,891
기관부담금	47	48	50	52	54	251
기본경비	22	23	24	25	25	119
자산취득비	10	-	-	-	-	10
직책수행경비	59	59	59	59	59	294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차감 소요)	(52)	(52)	(52)	(52)	(52)	(258)
합계	443	445	459	473	487	2,30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
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기준표

지급대상	지급액
위원장	월 2,900,000원
상임이 아닌 위원	월 2,150,000원

□ (상임위원 비서실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별 비서실 인력 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증원 인력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고, 총 6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비서실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정원 및 보수 추정액(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정원(명)	1인당 보수	증원 인원(명)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4급	1	117,733	2	235,466
	6급	1	66,218	2	132,434
	9급	1	35,953	2	71,906
	합계	3	-	6	439,806

주 1.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5급 이상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7,100만원 등 5년간 29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453	467	481	495	510	2,405
기관부담금	59	62	64	66	69	320
기본경비	29	29	30	31	32	152
자산취득비	30	-	-	-	-	30
합계	571	558	575	592	611	2,90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3명으로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억 1,400만원 등 5년간 총 52억 1,500만원으로 추정됨

[표 9] 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인건비	443	445	459	473	487	2,308
	비서실 인건비	571	558	575	592	611	2,907
	합계	1,014	1,003	1,034	1,065	1,098	5,21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연장(안 제7조)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상근기간 연장 일수, 인원,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음

[표 10]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연장 일수 및 대상 인원

(단위: 백만원)

구분	상근기간 연장 일수(a)	대상 인원(b)	1인당 지급액(c)	총 지급액 추정 ($d=a \times b \times c$, 백만원)	실시연도
국회의원선거	130일	510명	100,000원	6,630	2028년
대통령선거	130일	510명	100,000원	6,630	2030년
지방선거	114일	510명	100,000원	5,814	2030년
국민투표	119일	510명	100,000원	6,069	2031년
합계	—	—	—	25,143	—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6억 3,000만원 등 5년간 총 251억 4,300만원으로 추정됨

[표 11]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연장 (안 제7조)	-	6,630	-	12,444	6,069	25,1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 하향(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 (보수 및 기관부담금)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급에서 차관급으로, 선거연수원장의 보수는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현행 대비 보수 및 기관부담금 지출 감소액을 추정함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차관 및 2·3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참고하여 보수 감소액을 추정하고, 추정 보수 감소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 감소액을 추계

[표 12]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보수 감소액 추정(2026년 기준)

구 분			보수액(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현행 (장관급)	연봉	155,634
		수당	17,280
		소계	172,914
	개정안 (차관급)	연봉	151,149
		수당	13,800
		소계	164,949
	지급 감소액		7,965
선거연수원장	현행 (2급)	연봉	142,006
		수당	10,200
		소계	152,206
	개정안 (3급)	연봉	129,747
		수당	8,400
		소계	138,147
	지급 감소액		14,059
보수 감소액 합계			22,024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개정안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을 하향하는 경우, 지출 감소액은 2027년 2,6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3,600만원으로 추정됨

[표 13]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 하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23	23	24	25	26	120
기관부담금	3	3	3	3	3	16
합계	26	26	27	28	29	13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감사위원회 운영(안 제15조의3)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4명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회의 개최 횟수는 현행과 같이 연 4회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3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80만원 등 5년간 총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감사위원회 운영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간 수당지급횟수 (a, 4명×4회)	16	16	16	16	16	80
회의참석수당(b)	0.3	0.3	0.3	0.3	0.3	-
계(a×b)	4.8	4.8	4.8	4.8	4.8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고, 정당 추천위원의 상근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억 9,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2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1,014	1,003	1,034	1,065	1,098	5,215
정당추천위원 상근기간 연장 (안 제7조)	—	6,630	—	12,444	6,069	25,143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 하향(안 제15조 등)	△26	△26	△27	△28	△29	△136
감사위원회 운영 (안 제15조의3)	4.8	4.8	4.8	4.8	4.8	24
합 계	993	7,612	1,012	13,486	7,143	30,246

주 1. 사무총장 및 선거연수원장 직급 조정은 재정지출 감소 요인이므로 차감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